

3. 그 밖에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항

제48조의2 삭제 <2024. 7. 2.>

제48조의3 삭제 <2024. 7. 2.>

제48조의4(지정심사대행기관의 지원업무) 법 제60조의7제1항제4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업무”란 우수녹색 물류실천기업에 대한 홍보를 말한다.

[전문개정 2015. 12. 22.]

[제48조의3에서 이동, 종전 제48조의4는 제48조의5로 이동 <2015. 12. 31.>]

제48조의5(지정심사대행기관 지정의 공고)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0조의7제2항에 따라 지정심사대행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5. 12. 22.]

[제48조의4에서 이동 <2015. 12. 31.>]

제49조(국제물류사업에 대한 지원) 법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기업 또는 관련 전문기관 · 단체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단체를 말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4. 2. 5., 2025. 10. 1.>

1.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
2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·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정부출연연구기관
 - 가. 국토연구원
 - 나. 한국교통연구원
 - 다. 한국해양수산개발원
3.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·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한국철도기술연구원
4. 삭제 <2014. 2. 5.>
5. 물류관련협회
6. 법 제56조에 따른 물류지원센터
7.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33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및 연합회
8.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
9.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 · 고시하는 단체

제50조(투자유치활동의 평가대상기관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물류시설에 대한 소유권 또는 관리 · 운영권을 인정받은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, 2009. 9. 9., 2009. 12. 14., 2013. 3. 23., 2017. 3. 29.>

1. 「공항시설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중 국제공항 및 그 배후지에 위치한 물류시설
2. 「항만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및 그 배후지에 위치한 물류시설
-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>
-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기준과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되, 평가대상기관의 사업내용 및 특성, 투자유치 목표의 달성을 정도와 능률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>
-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행정적 · 재정적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>